2025년도「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」 주관기관 (대기업 등) 모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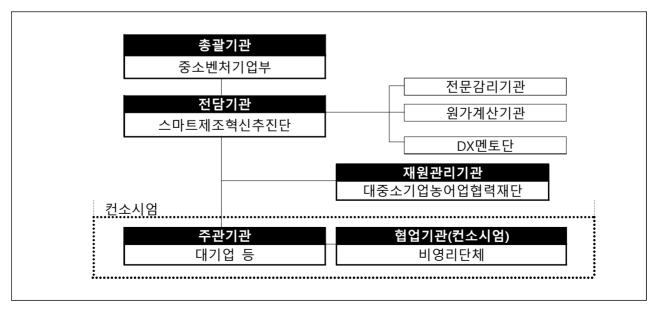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30일 중소베처기업부 장관

◆ 본 공고는 대·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 (대기업·공기업 등 출연기관)을 모집하는 공고이며, 중소·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 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│. 사업개요

- □ 사업목적
 -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급확산 생태계 구축
- □ 지원규모 : 총 300억원 (고도화)
- □ 추진체계 및 역할



- (추진기관-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 운영계획 수립, 주관기관 모집·선정, 사업 관리와 운영, 구축지원, 사업 완료점검, 예산집행 등의 업무수행
- (재원관리기관-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) 사업계획관리(예산조정 등),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, 정부지원금·주관기관출연금관리(사업비 교부·정산·반납), 사업 성과관리 및 지원 과제 사후관리(활용실태점점, 특별점검 등) 등의 업무수행
- (주관기관) 지원금 출연, 사업운영, 중소·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전문인력 지원, 추진점검, 사업비 집행관리, 현물출자(인건비) 등의 업무수행
- (협업기관) 정부-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, 중소·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사업비 집행,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

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□ 신청자격

- (주관기관)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
 - 중소/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 (컨소시엄 가능)
- (협업기관) 공공·민간기관 (비영리단체)
 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역량 보유 *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

□ 지원내용

○ (구축비용 지원)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

| 지의 이 처 | TI 의 ㅈ 거 | 총사업비 | .LOUI 분담비율 |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지원유형 | 지원조건 | | 정부 | 주관기관 | 중소·중견기업 |
| 고도화 | -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| 4.0억원 | 최대 30% | 30% 이상 | 40% 이내 |
| 고도화 (동일수준) | -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*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 | 1.0억원 | | | |

- * (중간1)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, (중간2)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
- ** 상세 지원 조건은 주관기관별 개별공고문 참고

- (운영비 지원) 주관기관이 타 기관(협업기관)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면, 협업기관·재원관리기관에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* 지원
 - 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에서 협업기관 4%, 재원관리기관 1%를 운영비로 각각 책정

□ 사업기간 : 최대 12개월 (협약 기간 협의 가능)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5년 1월 2일(목) ~ <u>2025년 6월 27일(금) 18:00까지</u>
 - *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(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)
- (신청방법) 주관기관 참여의향서를 전자메일로 접수하고, 당해연도 출연금 및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- 참여의향서 제출 : 양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전자메일 (wbshim@tipa.or.kr)로 제출
 - 온라인접수방법 : 사이트 접속 \to 회원가입(기업) \to 과제신청 메뉴 \to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\to 온라인 신청 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○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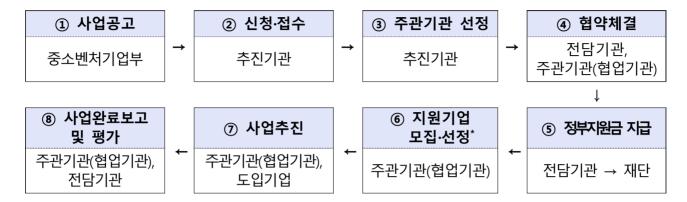
| 번호 | 제출서류 | 제출방법 | 제출시기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1 | 주관기관 사업참여 의향서(공문으로 제출) 1부 | ⊼ł TL⊓IIOI* | 고그기가라 |
| 2 |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| 전자메일* | 공고기간內 |
| 3 | 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| | 출연금 및 |
| 4 |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(안) 1부 | 시스템** 등록 | 지원규모 |
| 5 |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(안) 1부 | · | 확정시 |

^{*} wbshim@tipa.or.kr

^{**} https://smart-factory.kr(관련 양식 다운로드 가능)

4.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

□ 지원절차



* ⑥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

□ 선정방법

-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사항 등 요건을 검토하고,
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
- ※ 단,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신규로 참여하거나 사업수행의 적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

□ 기타사항

○ 주관기관의 현물출자*가 인정됨에 따라, 주관기관은 출연금 외에도 현 물출자를 포함하여 정부지워금과 매칭된 사업비 구성 가능

| 구분 | 직접사업비 구성(예시)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T正 | 주관기관 출연금 | 정부지원금 | 합계 | |
| 비율 | 30% | 30% | 60% | |
| 현금 | 100억원 | 120억원 | 220억원 | |
| (현물-인건비) | (20억원) | - | (20억원) | |
| 총계 | 120억원* | 120억원 | 240억원 | |

- * 주관기관은 도입기업 구축지도 및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주관기관 출연금의 최대 20%를 현물로 계상 가능
- ** 주관기관 현물 계상시 주관기관은 추진기관에 현물출자 확약서를 제출하고, 사업의 종료 후 해당 인력의 수행일지 제출

□ 도입기업 모집 관련사항

-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 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 절차 진행 예정
-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

| 구분 | 세부내용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①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 | - 대상 : 도입기업, 공급기업(대표, 실무자)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, RCMS 사용법 등 *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,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- 교육기관 : 추후 별도 안내 | | |
|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| - 대상 : 도입기업 - 내용 : ① CEO 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- 교육기관 :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: [붙임 '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' 확인] | | |

- ※ 주관 및 협업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교육인정이 가능하며, 사업 종료시 자체교육 운영결과 및 증빙 제출 필수
- 스마트공장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.
 - ※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 가능
 - 사업 종료 이후 재원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스마트 공장 활용도 및 로그기록 점검 예정
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·평가항목* 예외 인정
 - *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기 보유 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
 - 단, 공장설립(계획)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

5. 문의처

□ 담당기관 연락처

| 구분 | 기관명 | 연락처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고그네요 자려므이 | 중소벤처기업부 | 국번없이 1357 (종합상담) |
| 공고내용 관련문의 |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| 044-300-0958 |

□ 협업기관 안내처

| 구분 | 기관명 | 연락처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원관리 |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 | 02-368-8745 | 주관기관 발굴 및 대중소협력기금 출연 관련 |
| |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 | 02-6050-3857 | |
| 협업기관 |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지원실 | 02-3271-2988 02-3271-2957 | |
| |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| 02-2124-3392, 02-2124-4313 | '25년 참여 협업기관 |
| |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| 02-724-1190 | |
| |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| 02-6240-4873 | |

- * 주관기관/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
- **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

붙임1

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
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연수원 (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 운영)
- o (교육장소)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,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
- (교육기간) 연중 운영
- o (교육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 과정
- o (교육비용) 무상(심화 과정은 유상)
- (신청방법) 연수원 홈페이지(http://sbti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 ※ 교육 세부내용 및 일정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고

【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】

| 운영과정 구분 | 연수원명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중소벤처기업연수원 (경기도 안산) | 031-490-1472 |
| カギュゥ | 호남연수원 (광주) | 062-250-3000 |
| 집합교육 웨비나(Webinar) 장기심화과정 | 대구경북연수원 (경북 경산) | 053-819-5001 |
| 0110440 | 부산경남연수원 (경남 창원) | 055-548-8045 |
| | 충청연수원 (충남 천안) | 041-559-9225 |
| 온라인 교육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| 031-490-1288 |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

- (교육기관)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(한국산업인력공단 삼성전자 협업) ※ 고용노동부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
- (교육장소)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(수원·전주·구마·창원)
- o (교육기간) 연중 운영
- (교육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(15인 이상 모집 시 해당 기업 방문교육 기능)
- (교육비용) 무상 (고용보험 가입자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일부 교육비 발생)
- (신청방법)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→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신청 ※ 교육 세부내용·일정은 홈페이지(https://ccei.creativekorea.or.kr/gyeongbuk) 참고
- (문의처) 054-470-2704

경영자 (임원급)

스마트팩토리 추진리더

스마트공장 추진방향, 추진사례, 우수업체 벤치마킹

중간관리자

스마트팩토리 우수기업 현장학습

기구축한 우수기업 현장학습 기회의 장 마련

공장운영시스템

(6과정)

현장혁신리더

관리자의 역할과 책임, 제조원가, 스마트팩토리 품질관리

초정밀 가공

(1과정)

제조 자동화

실무자

(7과정)

공정시뮬레이션

(3과정)

현장혁신(12과정)

스마트팩토리 마스터 / 현장혁신기본 / SPS 이해 / 낭비개선 / 공정개선 / PRO-3M / 제조물류 / 품질혁신 / 자재관리 / 품질기본 / 생산관리 / 스마트팩토리 구축기법(업종별 성공스토리)

※ 교육과정 및 운영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